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 규 안**
정 도 진***
이 창 우****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하여 검토가 아닌 감사를 실시하며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감사 관련 보수와 시간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둘째,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회사가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회사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사전 예방적 공시 심사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사전 예방 중심의 공시 심사 감독으로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인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여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넷째, 부실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실 감사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를 의무화하며, 금융감독원의 회계 검사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게 위탁하고, 부정 적발 감사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회계 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회

*본 연구는 한국회계학회 연구용역보고서(2011)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 지원을 일부 받았다.

**승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계 감독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부실 감사, 감사인 지정, 감사보고서

.....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 따라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는 조사·보고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자를 감시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기능이 부여된 일종의 법정 내부 감사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직전 연도 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등)의 주식회사는 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받아야 한다.¹⁾ 또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²⁾ 주권 상장 법인의 반기보고서와 금융기관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주권 상장 법인의 분기보고서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 30인 이상, 주권 상장 법인 총수의 1% 이상,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감사하는 경우, 외국 감독

1) 외감법 제2조에서는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 상장 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 상장 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2) 자본시장법 제159조와 시행령 제167조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주권 상장 법인, 채권 상장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인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과 공동 검사 목적 등)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 대상 상장 법인 수 등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³⁾

우리나라의 회계 감독 체계는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회계 감리는 잘못된 재무정보가 공시된 후 한참이 지난 후 실시되므로 정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현행 회계 감리 제도는 적시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발행 공시, 비재무 공시, 수시 공시의 대다수가 재무정보로 표시되어 공시 상호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에도 회사별 회계·공시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감독 체계가 부족하다. 셋째, 코스닥 상장 법인 등 소규모 상장 법인에 대하여 기중에 외부 감사인에 의한 검증 기능이 부족하고,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증이 없어 이로 인한 투자자 등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주권 상장 법인에 비해 상장 예정 법인, 채권 상장 법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타 법인에 대한 감독이 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한 회계 감독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회계 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장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IV장에서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리는 주권 상장 예정, 채권 상장 법인 등을 포함한 비상장 법인의 감사보고서에 한한다.

1.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 회계 관리자로 지정하고, 내부 회계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에게 회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한다. 회사의 감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한다.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 담당 이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사실을 확인·검토할 의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구축·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내부 회계 관리자와 대표이사의 운영 실태 평가 보고 대상을 이사회와 감사(감사위원회 포함)로 한정하고 있다. 셋째, 외부 감사인의 검증 수준이 ‘감사(audit)’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검토(review)’ 수준이다. 넷째, 외부 감사인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보고서 보고 대상이 대표이사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표 1〉 우리나라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 현행 규정

대상 회사		회사 구축·운영 적용 기준	외부 감사인 검토 기준
주권 상장	대기업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모범 기준과 그 적용 해설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 기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적용 기준 범위와 동일)
	중소기업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모범 기준 제5장 중소기업용과 그 중소기업용 적용 해설서*	
주권 비상장 (자산 1천억 원 이상)	대기업	외감법상 최소한만 준수	
	중소기업	외감법상 최소한만 준수	

* 미국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COSO’) Framework 등 기준을 수용하여 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 중소기업용은 문서화 요구, 중요성 기준 및 의견 제시 의무 완화 등 업무를 경감시킴.

일반적이다. 다섯째, 비상장기업 등 대다수 기업을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식적 운영이 만연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초래한다.

최근에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연결 실체 중심의 내부 통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SK 글로벌과 대우의 회계분식 및 저축은행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연결 실체 등을 통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감사보고서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고 감사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⁴⁾ 이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외부에서 검증받은 최근 재무정보들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증권신고서상 첨부 서류인 감사보고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한 공인회계사 등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된 증명을 행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부과된다. 미국, 캐나다 등은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사용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된 감사보고서가 감사인의 동의 없이 첨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감사보고서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감사보고서 일자와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사이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후속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후속 사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전 감사보고서만 첨부되므로 투자자에게 잘못된 재무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스닥 업체가 허위의 재무정보를 토대로 유상 증자·사채 발행을 한 후, 그 자금을 횡령 등에 유용하거나 급격히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상장 폐지되는 경우를 예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둘째, 허위의 증권신고서로 인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증권신고서 효력일 기준으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일자가 증권신고서 효력일과

4) 여기서 감사보고서 등이란 연결감사보고서, 분반기 검토·감사보고서(연결포함) 등을 말한다.

상당히 달라 손해배상 책임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

3. 공시 심사 감독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재무 공시 감독은 발행 공시와 유통 공시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행 공시(자본시장법)

- (감독 대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모든 발행 공시
- (심사 시기) 증권신고서 수리 후 효력 발생 전 심사
- (감독 주체) 금감원 기업공시국

(2) 유통 공시(자본시장법, 외감법)

- 재무제표(외감법)
 - (감독 대상) 표본추출되거나 금감원, 검찰 등이 적시한 혐의 기업의 정기 공시상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감독 시기) 정기 공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사 대상 선정 혹은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 현재 평균 7~8년 주기로 심사
 - (감독 주체) 금감원 회계감독국
- 비재무정보 등(자본시장법)
 - (감독 대상) 정기보고서상 비재무정보, 지분 공시, 공개매수신고서 등 특수 공시, 합병 등 주요 사항 보고서
 - (심사 시기) 공시가 완료된 후 문제를 인지한 경우
 - (감독 주체) 금감원 기업공시국
- 수시 공시 등(거래소 규정)
 - (감독 대상) 주요 경영 공시 등 수시 공시, 공정 공시
 - (심사 시기) 회사 요청한 공시 정보 공표 전 심사
 - (감독 주체) 거래소

한편 외국의 재무 공시 감독은 사전 예방 중심과 통합 관리를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적시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재무정보의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의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여 투자자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과 같은 국가는 모든 상장사의 정기보고서상 재무정보를 ‘3년에 1회 이상’ 심사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여러 ‘공시 심사’ 중 중요 부분으로 정기보고서상 재무정보를 심사하고 있으며 비재무정보 공시, 발행 공시 등과 재무정보 공시를 회사별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 기업재무국이 상장기업의 재무 자료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중대한 위반 혐의는 조사국에 이첩한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에 대한 심사는 종합 심사 또는 재무 심사⁵⁾ 형태로 수행하며, 조사국은 기업재무국의 통보 사항, 자율규제기관 통보 사항, 언론 혹은 투자자 등의 제보를 토대로 위반 혐의 기업을 조사한다.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심사 업무는 공시 요건을 잘 준수하도록 회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설명, 추가 공시 필요 사항, 수정 사항 등에 대하여 당해 회사와 수차례에 걸쳐 코멘트 레터(comment letter)를 통해 대화 및 협력해 나간다.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첨 방식에 의하지 않고 위험 징후를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선정하되 ‘3년에 1회 이상’ 심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재무정보를 포함한 정기보고서가 공시되어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친 후 한참이 지나서 심사가 진행되므로 공시 시점부터 심사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 투자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업별로 평균 7~8년 주기로 심사함에 따라 일정 기간 공적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횡령, 회계 부정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욕구를 억제하기 어렵고, 회계 부정을 조기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상장 폐지된 기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해산·합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 폐지 기업은 회계 부정과 관련되거나

5) 종합 심사(a full financial and legal review)는 재무 및 비재무 부문 등 보고서 전반에 대하여 정밀 심사하는 형태로 회계사 심사관과 변호사 심사관이 공동으로 재무·비재무정보를 구분하여 심사하며, 재무 심사(a full financial review)는 재무제표 및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MD&A)에 대하여 정밀 심사하는 형태로 회계사 심사관이 심사한다.

〈표 2〉 2009년과 2010년의 상장 폐지 유형

유형	2009년	2010년	합계
회계 처리 위반	6	18	24
감사 범위 제한*	16	13	29
횡령·배임 혐의*	40	39	79
정상적 상장 폐지	24	25	49
합계	86	95	181

* 재무제표상 중요 항목의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과 횡령·배임은 대체로 회계 부정을 수반함.

그 가능성이 내포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계 부정이 있었음에도 상장 폐지 전 회계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계 부정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와 상장 폐지 현황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 기업들이 일반 공모 등 발행 공시 전 회계 부정을 저지른 시점에 선의의 피해자를 대량 양산하였으며, 회계 부정 이전에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사항 공시(지분 취득, 대규모 투자, 증자 등)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회계 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발행, 재무제표, 비재무정보, 수시 등 공시 전반을 회사별로 통합하여 감독하는 방향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부실 감사 회계법인 제재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분식회계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의 역할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⁶⁾ 따라서 현재는 부실 감사 방지를 위한 외부감사인 제재의 실효성 및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외부 감사 기능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실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중 중조치는 회계법인이 ① 소속 회계사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②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경

6) 특히 금융회사의 분식회계는 국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불신 등으로 금융 시장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표 3〉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현황

구분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조치 종류	① 등록 취소 건의 ② 업무 정지 건의 ③ 당해 회사 업무 제한 * 5년 이내 제한 가능 ④ 증선위 감사인 지정 업무 제한 ⑤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 감사보수액 한도 ⑥ 경고 또는 주의	① 등록 취소 ② 업무 정지(1년 이내) * 업무 정지에 준하는 과징금 최대 5억 원 부과 가능 ③ 일부의 업무 정지(1년 이내) ④ 견책
처분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우에 해당하며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기타의 경우에는 외감법상 당해 회사 업무 제한, 감사인 지정 업무 제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표 3〉은 우리나라의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업무 정지를(공인회계사는 직무 정지)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등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 원 이하(공인회계사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2).

현행 외감 규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를 위법 행위로 조치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과 감독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도 조치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대표이사를 조치한 경우는 없다.⁷⁾

부실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 감사로 조치를 받더라도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가 아닌 경우, 동종 업종

7)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3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의 다른 회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런 제한 없이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를 감사하게 되는 경우 부실 감사를 반복적으로 초래할 소지가 있다.⁸⁾

둘째, 부실 감사 적발 시 당해 회사 감사 보수의 10~100%까지 공동기금을 적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외감 규정 시행세칙⁹⁾). 추가 적립된 금액은 부실 감사 조치와 관련된 감사 업무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환이 가능하며, 청구권 기간이 지나면 추가 적립금액 전액의 반환이 가능하므로 금전적 제재 효과는 당해 기간의 이자 수입에 불과하다.¹⁰⁾

셋째,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조치 결과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의 점수를 부과하여 감사인 지정 시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과거 3년간 부과된 감리 조치 결과 지정제의 점수를 누적 합산하여 100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30점당 1개 회사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감사인 지정 제도의 취지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것이나 현행 제도에서는 부실 감사를 수차례 반복하더라도 지정 감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입할 여지가 있다.¹¹⁾

넷째, 현행 과징금의 부과 한도(5억 원)는 업무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기에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거짓 기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한도(20억 원)와 형평이 맞지 않다.

다섯째, 대표이사가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회계법인 내에서 매출 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감사 위험이 높은 법인까지 회계 감사를 하는 등 부실 감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8) 중견의 A회계법인의 경우 2008년 6월과 2010년 12월에 부실 감사로 인해 동일한 감리 조치(감사 업무 제한 1년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10%)를 받았으나, 현재(2011년 6월 말로 종료되는 사업연도) 11개의 저축은행 감사인으로 있다.

9) 외감법 시행령 제17조의 9(감사 보수의 3% 이내)를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10)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은 감사보고서 제출 후 3년 이내(진행 중인 소송이 없을 경우),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후다.

11) 감사인 지정 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등에 한정하여 회사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강제 지정하며, 외감 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라 감사인 지정 점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5.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 감시 현황 및 문제점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외부 감사인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 및 처벌 강화 등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부실 감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징계 등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나라 현재의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회계 감사는 합리적인 확신(reasonable assurance)에 근거하고 있으며 회사 자료의 허위성 여부는 조사·판단하지 않는다.¹²⁾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부 감사인의 역할과 이해관계자(예금주 등)의 기대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을지라도 현행 외부감사 기준의 업무 범위가 이해관계자의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필요가 있다.

III.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개선 목적은 현행 감사 보수 경쟁 위주의 감사 시장에서 감사 품질 경쟁 위주의 감사 시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회계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12) 외부 감사는 수행 기준인 회계 감사 기준에 명시된 외부 감사의 고유 한계로 회계 부정을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 상존한다.

(1) 합리적 확신

▪ 전반적으로 중요한 왜곡이 없다는 정도의 확신만 제공, 다음 사유로 부정·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움

① 표본 감사, ② 회사 임직원의 공모 가능성, ③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감사 증거의 부족, ④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검증하기 어려운 사항이 다수 존재 등

(2) 회사 자료에 대한 신뢰

▪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에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의 허위성 여부는 조사·판단하지 않음.

1.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제도 강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부실 감사 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상장법인 등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제한하고, 품질 관리 감리 결과 공표 등을 통한 품질 관리의 실효성 확보 등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은 감사 보수 경쟁이 아니라 감사 품질 경쟁 위주의 감사 시장으로 재편해야 한다.

2. 기업 내부 감시 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외부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 감시 기구로 이전하고, 경영진 등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의무의 부과 등 기업 내부 감시 기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상장법인 분기보고서의 외부 검토를 의무화하여 분기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3. 회계 감독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추구

회사별로 재무, 비재무, 발행 공시를 통합해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로 진화하고, 공적 감독 체계를 ‘상장법인’ 중심에서 ‘공익실체(public interest entity)’ 중심으로 전환하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부실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부실 감사 시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4. 사회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 제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책임자로서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하며, 주식회사만을 위한 외감법을 모든 형태의 회사를 포괄하는 회계에 관한 법률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회사 형태별 회계 처리기준을 제정하는 등 사회 전반적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모든 회계 감독을 총괄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회계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회계 감독기구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규제가 증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나 최근의 저축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부실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부담하는 엄청난 비용(cost)과 비교해보면 바람직한 회계 감독 체계의 정책을 위해 사전에 증가하는 비용은 얻게 되는 혜택(benefit)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개선 방안

지금까지 논의한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 강화

1) 경영자에 의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평가 관련 개선 방안

대표이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외감법에서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적극적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해당 업무를 행하는 내부 회계 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내부 회계 관리자가 운영 실태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 보고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운영 실태 평가 보고 대상을 현행 ‘이사회와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에서 현행 감사보고서의 보고 대상인 “주주 및 이사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외부 감사인에 의한 검증 관련 개선 방안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 결과에 대한 확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감사인에 의한 ‘검토(review)’ 수준에서 ‘감사(audit)’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

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감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PCAOB의 감사 기준을 참조하여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관한 감사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¹³⁾ 또한 외부 감사인에 의한 검토 결과 보고 대상을 대표이사에서 주주 및 이사회로 변경(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보고 대상과 일치)하여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안은 순차 실시 방안으로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기업을 먼저 감사하고, 기타 기업은 나중에 감사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모든 기업에 대해 동시에 감사하는 방안이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실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먼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첫 번째 안)이 바람직하다.

3)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구축·운영 대상 회사 축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비상장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 실체만을 대상으로 의무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¹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이 현재는 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므로 이해관계가 적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적은 법인들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은 축소하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의 통합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하여 검토 대신에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통합한 감사(integrated audit)가 필요하다. 재무제표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두 감사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때문이다.

13) PCAOB Auditing Standard No.5 -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14) 여기서 공익 실체란 주권 상장, 채권 상장, 상장 예정,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감사보고서의 형식 변경도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감사’와 ‘검토’의 업무 수준 차이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보고서를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별도로 첨부한다. 그러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외부 감사를 요구하는 미국의 경우 정보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통합하여 보고한다. 다시 말하면 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내부 통제 제도 감사보고서를 통합한 통합 보고서(combined report)를 작성하거나, ② 내부 통제 제도 감사에 대해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내부 통제 제도 감사 의견을 언급하고, 내부 통제 제도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 감사 의견을 특기 사항(explanatory paragraph)으로 언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하여 검토 대신에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며 미국처럼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모범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모범 기준(‘best practice’)을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성 있는 고품질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모범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모범 기준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에 관한 준거 기준으로 외감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6) 연결 실체 중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으로 전환

2011년에 IFRS를 도입함에 따라 상장·공시·회계 감리 등 관련 제도 전반을 IFRS 도입 일정에 맞추어 연결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기 공시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2조 원 미만 기업의 분·반기 공시는 2013년부터 적용하며, 수시 공시 등 기타 공시 제도 및 진입·퇴출 등 상장 제도는 2013년부터 연결로 전환된다. 연결 공시 체계에 맞추어 IFRS 도입 기업은 연결 중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결 중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안은 순차 실시 방안으로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기업을 먼저 실시하고, 기타 기업은 나중에 실시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모든 기업에 대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다. 연결 중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실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

여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먼저 연결 중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첫 번째 안)이 바람직하다.

7)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 감사 보수와 시간 별도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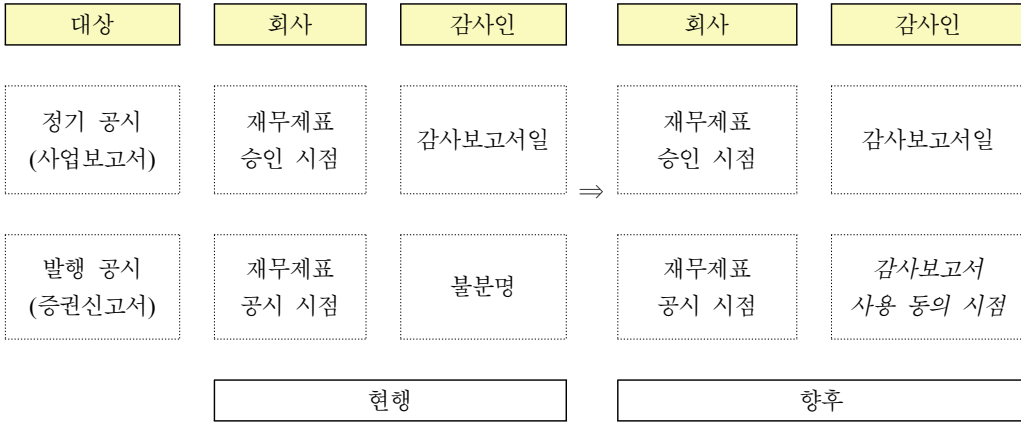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하여 검토 대신에 감사를 하는 경우에 감사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소요되고 위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보수와 투입 시간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 관련 보수 및 감사 시간과 별도로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여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즉,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보수와 시간을 포함한 총감사 보수와 총감사 시간이 공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세분하여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와 관련된 보수와 시간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이다.

2.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

증권신고서 제출 시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인의 책임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 의무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를 감사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때,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사용 동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사례(캐나다 감사인증위원회, 미국 PCAOB 등)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에 관한 업무 기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사용 동의 절차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¹⁵⁾

15) 캐나다 감사인증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사용 동의에 관한 업무 기준 및 PCAOB의 증권거래법상 공시 서류에 대한 업무 기준 등을 참조하였다.



〈그림 1〉 감사 대상 재무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 시점 개선안

(1) 주요 고려사항

- ① (정확성) 증권신고서상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가 감사받은 재무수치와 일치하는지
- ② (불일치) 증권신고서상 기타 재무정보가 감사받은 재무 수치와 비교할 때 문제점 혹은 의문점이 없는지
- ③ (후속사건 확인) 감사보고서일 이후 주요 사건이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2) 주요 절차

- ① (동의일 결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혹은 현실적으로 후속 사건 검토가 가능한 날
- ② (정확성 및 불일치)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의 정확성 검토
- ③ (후속사건 확인) 회계 감사 기준 560 ‘대차대조표일 이후 사건’에 따라 후속 사건을 검토하며, 검토 받지 않은 중간 재무제표가 존재할 경우 분반기 검토 준칙에 따라 검토 절차를 수행
(주요 검토사항) 우발부채 및 약정 사항의 주요 변동, 재무 구조 변경, 소송 사건, 주요 자산 매각, 주요 의사록, 비정상적인 회계 수정 등
- ④ (발견 사항 처리) 증권신고서상 오류, 불일치 등이 발견된 경우 이전 공시 정보 및 증권신고서를 수정 요구

- ⑤ (증권신고서 승인 확인) 증권신고서가 대표이사 및 신고 담당 임원에 의해 적절히 승인되었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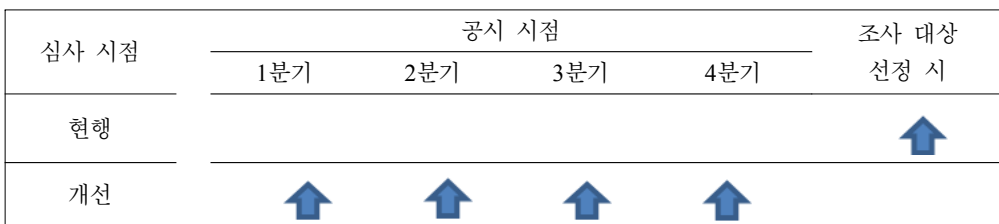
3. 사전 예방적 공시 심사 감독 체계로 전환

1) 상장법인의 재무 공시 감독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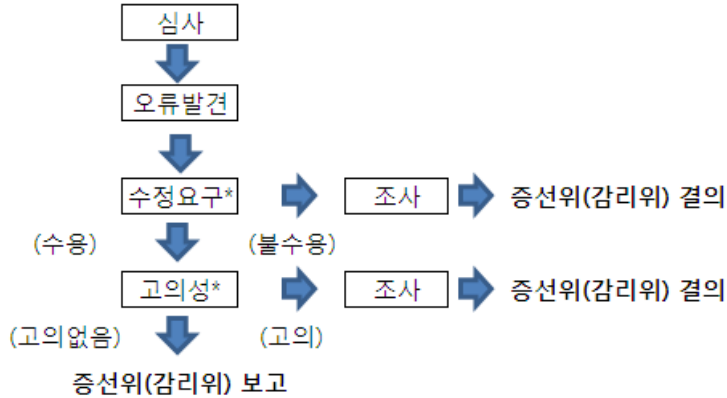
우선 재무정보 심사 목적을 분식 혐의 사전조사에서 투자자 등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적시 제공으로 변경해야 한다. 적시성이 결여된 현행 심사를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공시 직후에 심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분기별 회계 공시 자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즉, 현재는 모든 공시가 이루어진 후 나중에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심사하고 있으나, 이를 공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발견된 오류는 조기에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되, 중요한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적시성 있게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또한 현재 기업별 평균 7~8년의 심사 주기를 미국, 호주와 같이 3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재무정보 심사 결과의 사후 처리

정기보고서상 재무정보를 심사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자발적 수정 공시를 요구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자발적 수정 위주의 감독 방식을 운영 중이며, 처벌보다는 자발적 수정 공시를 이용한 시장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호주는 심사 결과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향후 보고서에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영국 52%, 호주 50%(1998~2004년)]. 독일의 과거 3개년 평균 자발적 수정비율은 73%다(2006~2009년).



<그림 2> 심사 시점 변경 흐름도



* 패널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그림 3〉 심사 결과 사후 처리 흐름도

〈그림 3〉은 심사 결과 사후 처리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자발적 수정 공시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로 종결한다. 패널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고의성을 판단하되, 그 적절성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통해 재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오류는 수정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적시성 있게 회계 부정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일정 기간을 주기로 공시기업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연말보고서(10-K)를 공시한 후, SEC가 3년을 주기로 공시 절차를 통해 의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회사의 응답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시심사와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한 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무 공시 심사부서의 업무가 과중하여 제대로 된 공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제도의 시행과 함께 재무 공시 심사부서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재무 공시 심사부서의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회사의 분기보고서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외부 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횡령 등을 일으켜 악의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분기 검토·감사가 면제된 직전 사업연도 자산 5,000억 미만 회사도 외부 검증을 의무화한다.

둘째, 회사 내부 감사인의 부정 행위에 대한 공시·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 행위 혐의를 통보한 경우 감사(감사위원회) 등이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를 외부 감사인이 검토한 후, 그 모든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 공시하도록 한다.

셋째,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동의와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유가증권신고서에 첨부할 경우 감사인의 사용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외부 감사인은 동의서한을 발행할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의 중요한 후속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의무화한다. 해외사례(미국 PCAOB, 캐나다 감사인증위원회 등)를 참고하여 추가 검토 업무 기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4. 부실 감사 회계법인 제재 실효성 제고

1) 업종별 감사 업무 제한 조치 도입

부실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부실 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서 업종별 감사 업무 제한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대안은 금융업 중 해당 업권(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안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부실 감사일 경우 업무 정지보다는 낮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형 회계법인일수록 저축은행 감사를 회피할 가능성 있으며, 업종별로 제한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의 감사 업무도 실질적으로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대안은 동종 업권(금융업) 전체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첫 번째 안보다 실효성 높은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업무 정지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과잉 제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안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등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안은 비금융업권까지 감사 업무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안은 업종별 전문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금융위원회 인·허가 대상이 아닌 비금융

업권의 업종별 분류 기준이 불명확한 단점이 있다.

위의 세 가지 대안 중에서 회계법인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면서 과잉 제재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첫 번째 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의 강화

우리나라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기본 적립금과 연간 적립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로 납부하는 추가 적립금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 적립금: 법인 등록 후 1년 이내 납부(100인 미만 5,000만 원 이상 2억 5,000만 원 미만)
- ② 연간 적립금: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외감 매출의 4%, 한도 20%)
 - ※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연간 적립금은 면제
- ③ 공동기금의 추가 적립
 - 공동기금 사용 시: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사용분 전액 or 보수의 5%)
 - 증선위 징계: 직전 사업연도 감사 보수의 3%
 - ※ 청구권 행사 종료 후 반환[보고서 제출 후 3년 후(진행 중인 소송이 없을 경우), 청구권자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후]

또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외부 감사를 포함하여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등을 감안해 도입한 것으로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자격사법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공동기금과 손해배상 준비금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손해배상 공동기금과 손해배상 준비금의 비교

구 분	손해배상 공동기금(외부 감사)	손해배상 준비금(전체 업무)
연간 적립금액	감사 보수 총액의 4%	연간 총매출액의 2%
적립 한도액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 보수 총액 평균의 20%	최근 3개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
적립처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 유보
대체 수단	손해배상책임보험	없음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여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 감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추가 적립 조치 금액을 당해 감사 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추가 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예를 들어 부실 감사 조치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였으나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인 부실 감사 수행,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감사로 조치 받은 경우 등에는 추가 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일부 특별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 적립금의 반환을 제한하거나 혹은 반환 기간[현재는 보고서 제출 후 3년 후(진행 중인 소송이 없을 경우),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을 연장해야 한다.

3) 감사인 지정 제외 조치 확대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인 선임 기간 내 감사인을 미선임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 및 부당 교체 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 조치 시, 상장 예정 기업,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경우, 회사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

〈표 5〉 최근 3개년 외감 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회사 현황

(단위: 사)

구분	2008. 12	2009. 12	2010. 12
1. 외부 감사 대상(A)	20,258	17,209	18,598
상장 회사(B)	1,788	1,768	1,772
기타 법인	18,470	15,441	16,826
2. 감사인 지정 회사(C)	301	270	295
감리 조치 회사	48	41	31
상장 예정 회사	142	125	172
기타 사유	111	104	92
3. 외감 대상 차지 비중(C/A)	1.48%	1.57%	1.59%
4. 상장 회사 차지 비중(C/B)	16.8%	15.3%	16.6%

다. <표 5>는 최근 3년간 외감 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회사 현황이다.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 제외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리 조치 시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현재 부실 감사 정도 등에 따라 10~200점까지 부과하는 것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 감사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지정 감사인 자격을 박탈한다. 예를 들어 5년간 누적 지정 제외 점수가 일정한 수준에 달하는 경우 1년간 지정 감사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선 확대

부실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중조치 대체 과징금을 현행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5.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 강화

1) 금융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 범위 확대

자유수입 계약에서의 외부 감사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럽 등에서도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등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제 지정 제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와 같이 각 권역별(보험, 증권, 은행 등)로 감사인 지정 제도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지정 감사 제도를 일부 도입(BIS 비율 5% 미만, 임원 문책, 적기 시정 조치 등의 경우)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된다.

지정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지정 감사 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자유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 감사인이 첫 번째에 한해 자유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정 감사가 종료되어 최초로 자유수입을 하는 경우에 기존의 지정 감사인도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지정 감사인이 지정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감사인 지정 기간 동안에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화

감사 절차 중 발견된 부정 행위 등에 대한 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법 (Section 10A of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은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 행위(illegal 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① 부정 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 부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회사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
- ② 상기 절차 후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
 - 부정 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
 - 경영진이 시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¹⁶⁾
 - 시정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표준 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절하거나 감사 계약 철회를 고려
- ③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상기 ②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전달받은 후 1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SEC에 보고하고, 감사인에게 SEC 보고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④ 만약 SEC 보고문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 계약을 철회하거나 상기 ②에 따라 회사에 전달한 검토 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 ⑤ 상기 ④에 의해 감사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상기 ②에 따라 회사에 전달한 검토 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에서도 감사 절차 중 발견된 부정 행위 및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즉, 외부 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 행위를 보고하면 내부 감시 기구는 이를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당

16)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Independent Special Counsel(주로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Independent Special Counsel의 권고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 수정, 내부 통제 강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수행한다.

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행처럼 회계법인의 검증 수준을 합리적인 확신을 기초로 한 ‘외부 감사’ 체계를 유지하되,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 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

3) 금융감독원 회계 감사의 위탁

금융감독원이 모든 저축은행을 매년 검사하기는 어려우므로 회계 분야 감사를 적격성 있는 회계법인에 위탁하거나, 금융감독원 검사 시 갖는 권한 및 책임을 회계법인에도 부여하고, 회계법인의 위탁 업무를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즉, 금융감독원 감사의 일부에 적격성 있는 회계법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서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일부 검사 업무를 지원받으며, 감사인은 검사 시 획득한 정보를 회계 감사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부정 적발 감사의 제한적 도입

해당 연도에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정 적발 수준의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¹⁷⁾ <표 6>은 외부 감사와 부정 적발 감사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일부 특정 계정 과목에 한정하여 일반적인 외부 감사 기준을 넘어서는 감사 절차(예시: 전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

<표 6> 외부 감사와 부정 적발 감사의 구분

구분	감사	부정 적발 감사
1. 수행 기준	회계 감사 기준	부정 적발 감사 기준 제정
2. 검증 방식	표본 검사	중요 사항 전수 검사
3. 회사 자료에 대한 신뢰	진실하다고 신뢰	문제 소지에 적극적 의심
4. 회사의 허위 자료 제출 제재	형사 처벌 대상	형사 처벌 규정 제정
5. 중요성 고려	중요 금액만 감사	모든 부정 (금액 무관)
6. 중요한 부실감사한 법인 제재	형사 처벌, 중조치 요건 시 등록 취소 등	형사 처벌, 중조치 요건 시 등록 취소 등 규정 제정

17) 금융감독원 감사가 1~3년 주기로 실시되므로 검사받지 않는 사업연도가 존재한다.

요가 있다. 이때 필요 시 감사 기준 개정 및 금융감독원의 ‘실무의견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회계 감사 기준과 별도로 부정 적발 감사 기준을 제정하고, 현행 회계감사보고서와는 별개의 보고서로 발행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독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관련 보수와 시간을 별도로 공시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범위 축소와 강화를 통해 내실화를 기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실시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감사인의 위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회사가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회사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사전예방적 공시심사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사전예방 중심의 공시심사감독으로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인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여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넷째, 부실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실 감사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부실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실 감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능력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감사 업무 제한 시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감사범위 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를 의무화하며, 금융감독원의 회계 검사 시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게 위탁하고, 부정 적발 감사를 일부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기능의 강화로 이어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금융감독원의 회계 검사 위탁과 부정 적발 감사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회계 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및 감독 방향” 심포지엄 자료, 2008년 8월 25일.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011. 5. 20),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11a.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2011. 6. 30 최종 개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011b.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시행령(2011. 6. 30 최종 개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011c.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2011. 6. 30 최종 개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011d.
- 이창우 · 정도진 · 전규안 · 김이배 · 이재은 · 이명곤,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201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8. 3. 3 최종 개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008.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최종 개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010.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1. 6. 27 최종 개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011.
-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수습에관한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 제46호(2004. 6. 15 최종 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 제23호(2006. 8. 11 최종 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2006.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계속교육 표준연수기준(2011. 3), 2011a.

한국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 제14호(최종개정 2011. 5. 24) 한국공인회계사회, 2011b.

British Council, Accountancy, 2010. available at the web site of: <http://www.britishcouncil.org/learning-infosheets-accountancy.pdf>.

PCAOB Auditing Standard No. 5 -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Professional Accountants in Business (PAIB) Committee, The Diverse Roles of Professional Accountants in Busines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2004.

A Study on the Issues of Improving Current Korean Accounting Regulation System

Jeon, Kyu-An*

Chung, Do-Jin**

Lee, Chang-Wo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s surrounding current accounting regulation systems in Korea. In this paper we argue the following five points.

First,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ithin a firm should be enhanced.

Second, when firms use auditors report for the purpose of issuance of both equity and debt securities, they should get permission from their audit firms so that the reliability level may be upgraded.

Third, for the purpose of accounting regulation, we should have a preventive monitoring system rather than ad-hoc review system.

Fourth, more severe penalty should be imposed upon audit firms which violates auditing standards.

Fifth, intensive accounting monitoring is needed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designated auditor system.

Keywords: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udit failure, auditor designation, audit repor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